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78인으로 한다.
-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로 한다.
- ③ 입소자 모집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방문·전화 상담 등을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시설은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신원인수인)와 서면으로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입소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계약 목적: 시설급여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
 - 2.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 계약 기간
 -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 비용의 종류·산정 기준·납부 방법(별지2 참조)
 -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의 보호 및 비용 부담, 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본 규정 제 67조 참조)
 -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해지 사유, 절차 및 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변경 작성한다.
- ④ 시설은 계약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무】

서비스이용자 ‘갑’과 서비스제공자 ‘을’과 보호자(신원인수인) ‘병’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1. 서비스이용자 ‘갑’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2. 서비스제공자 ‘을’의 의무
 - ① ‘갑’의 건강관리 협조
 -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병’에게 즉시 연락
 -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⑤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 3. 보호자(신원인수인) ‘병’의 의무
 -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의무
- 4. 보호자(신원인수인) ‘병’의 권리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의 권리
 -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의 권리
 -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의 권리
 - ④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요구의 권리

◎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처리한다.

- 1. 이용자의 사망
 - 2. 의료적 사유로 시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용료 장기 체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 4. 이용자의 행위로 시설 운영이나 타 이용자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를 준수한다

◎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정한대로 한다.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이용료의 변경과 절차는 각호에서 정한대로 시행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나. 본인부담금 변경(감경, 감경해지)이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변경일을 기준으로 즉시 적용한다.
 -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문자, 알림톡 등 모사전송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적용일을 기준으로 직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 요청시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기타 직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 파악과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 3.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취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 4.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보호자에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호자께서 인계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원진료가 어려운 경우, 시설에서 병원진료를 대행할 수 있다.
-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 6.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식사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연하정도 및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7.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가. 시설내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나.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호칭은 존칭을 사용하며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 다. 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라. 시설 이용자의 개인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이용자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다.
 - 마.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바. 이용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급여제공기록에 대해 보호자인 신원인수인이 정보제공요청시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한다. 단, 신원인수인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입소자에 대한 정보의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공개하도록 한다.
 - 사. 입소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며, 관련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아. 목욕서비스는 월4회 이상 제공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8.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가. 시설은 이용자의 여가생활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용자가 다양한 취미활동 및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도록 도서, TV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나.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화하여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

9. 재활치료 서비스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프로그램(중풍, 치매 등) 또는 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10. 이용자의 신체기능상태 유지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연1회이상 수립하고, 신체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이상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

1.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타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침대 안전바,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④ 다인실(3~4인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실할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특별침실 사용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실한다.
-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감염으로 인한 격리

- ① 독감, 코로나 등의 감염으로 인하여 타이용자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어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격리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실한다.
- ② 격리기간 동안 이실후 상급침실료는 적용할 수 있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가 변화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 및 협력병원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의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계약의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계약의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계약의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한 경우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와는 별도로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병원 진료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사전 통지하여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직원은 어르신을 인계한 후 시설로 복귀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이용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사설구급차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량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⑤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와 건강상태 악화에 대한 사항
 - 가. 감염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감염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나.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다. 기타 사유로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상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 ⑥ 수급자 사망에 대한 사항
 - 가. 수급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할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임종을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시설에서 임종시 장례는 보호자께서 정함에 따라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무연고자의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1개월 이내 관할 읍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및 직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반입제한 및 소지불가물품) 이용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지팡이, 칼, 가위, 라이터 등)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전열기구 등)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 ① 의료 전문기기와 소화기 등은 시설 내 담당자 및 시설관리자외에는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 ② 시설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상황발생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④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



2026년 입소자 요양비 안내



입소 시 등급비용

구 분		시설급여		
등 급		1등급	2등급	3.4.5등급
1일 입소비용		93,070원	86,340원	81,540원
30일 입소비용		2,792,100원	2,590,200원	2,446,200원
공단부담 80%		2,233,680원	2,072,160원	1,956,960원
일반 20%		558,420원	518,040원	489,240원
경감 12%		335,050원	310,820원	293,540원
경감 8%		223,360원	207,210원	195,690원
비급여(식대+간식)		468,000원	468,000원	468,000원
월 총비용	일반 20%	1,026,420원	986,040원	957,240원
	경감 12%	803,050원	778,820원	761,540원
	경감 8%	691,360원	675,210원	663,690원



개인별 실비 및 비급여 항목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박	2인실 : 1만원
	식비 1식, 간식비 2식	식비 : 4,400원 , 간식비 2,400원
	헤어 & 네일 케어	자원봉사 무료지원 및 재능기부
	기타비용	약재비, 진료비, 구급차, 기호식품, 복지용품 등